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68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68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소4574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0. 4. 24.

판결 선고 2020. 8. 1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가소4574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 2) 원고는 2018. 8. 13. 피고와 사이에 광고대행비를 600만 원(광고영상물 제작비 포함), 계약기간을 8개월, 광고송출 시점을 계약일로부터 2주일 후로 정하여 인터넷TV를 통해 원고 업체의 광고영상물을 일정 횟수로 송출되게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13.~27. 피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3) 한편 피고는 2018. 8. 말경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였으나 인터넷TV 측 광고 심의 과정에서 보완요구를 받아 실제 광고가 송출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2018. 10. 초순경 광고 송출 여부를 확인하는 원고에게 송출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 4) 그 후 원고는 2018. 10. 말경 광고가 송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계약해제 및 광고대행비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8. 11. 13.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8. 11. 16.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이행기인 2018. 8. 말경까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10. 말경 피고에게 광고가 송출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광고대행비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때로부터 상당 기간까지 광고가 송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11. 16.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광고대행비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제1심법원이 인정한 2018. 11. 13.과 달리 원고의 청구범위 내인 2018. 11. 23.로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였는데 인터넷TV 측 심의 과정에서 광고 송출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심의에 적합한 광고영상물을 제작할 의무는 피고의 계약상 의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에 적합한 영상물을 제작 내지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는 2018. 10. 말경까지도 원고에게 광고 송출 여부 등 이행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였고, 예정된 광고 송출 시점보다 상당 기간이 경과한 원고의 계약해제 통지 시까지도 광고가 송출되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가 광고영상물을 상당 기간 내 보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이행지체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희찬

판사김선숙

판사서동민